

---

# 우정9급 우정사기보계리공개경쟁채용시험 질의응답(Q&A)

---

2016. 3.

우 정 사 업 본 부

## 목 차

1. 우체국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직이란 ? .....	1
2. 시험일정 .....	1
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.....	1
4. 학습자료 및 공고문 게시 .....	1
5. 응시연령 .....	2
6. 지역별 구분모집 .....	2
7.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.....	2
8. 응시원서 접수 .....	2
9. 응시자 거주지 제한 .....	3
10.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방법 .....	3
11.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.....	3
12. 자격증 취득일 기준 .....	4
13. 자격증 가산 중복적용 여부 .....	4
14. 워드프로세서(1급) 가산여부 .....	4
15. 거주지 제한 모집 사유 .....	5
16. 응시인원 및 경쟁율 .....	5
17. 필기 및 면접시험 방법 .....	6
18. 합격 후 임용지역 .....	6
19. 임용유예 .....	7
20. 신체검사 .....	7

## 1. 우체국 우정9급 우정서기보 계리직이란 ?

- 우체국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은 우체국금융업무·회계업무·현업창구업무·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

## 2.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채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(5일)	필기시험	필기시험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3.7.(월)	6.7.(화) 09:00 ~ 6.11.(토) 21:00까지 * 인터넷접수만 가능	7.23.(토)	8.23.(화)	10.8.(토)	10.12.(수)

\* 원서접수: 인터넷 접수만 가능(마감일 17:00까지)

## 3.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채시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- 한국사(상용한자 1~2문제 포함), 우편상식 및 금융상식(기초영어1~ 2문제 포함), 컴퓨터일반
- 4지 택 1형 (20문항 과목별 20분, 총 60분)

## 4. 학습자료 및 공고문 게시 확인 방법

-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→ 정보마당 → 채용정보 → 자료실
- 지방우정청별 공고문은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

## 5.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공무원 응시연령

- 응시자격 : 연령 18세 이상(1998.12.31 이전 출생자)
- 응시결격자
  - 해당 시험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## 6. 지방우정청 지역별 구분모집 내용

-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  - 각 지방우정청 지역구분 모집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당청 문의

## 7.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

- 각 지방우정청 공고문 응시자격 요건 참조

## 8. 응시원서 접수방법

-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, 응시지역 1곳만 선택하여 응시 가능
  - 복수지원불가(원서접수 시 시스템에서 접수 불가)
  - 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 가능  
(응시원서 접수기간(2016. 6. 7(화) ~ 6.11(토) 중 바로가기 코너 생성 예정)

## 9. 응시자 거주지 제한

○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- 응시지역에 2016. 3. 7.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시 가능  
ex) 서울청·경인청의 경우, 공고일(2016. 3. 7.)기준 주민등록이 서울 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에 되어 있을 경우 서울청, 경인청 중 1곳만 선택하여 응시 가능

## 10. 취업지원가산점 적용 방법

○ 각 과목별 40% 이상 점수 + 취업지원대상자별 해당 기점 비율(3% 5% 10%) 점수를 가산  
(단,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자에 한함)

- ex) 과목별 40%이상 득점하고 3과목 합산 평균점수가 70점인 경우
  - 3과목 합산 평균점수 70점 + 취업지원대상자별 해당되는 비율점수 (3점,5점,10점)를 가산

## 11.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

○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

-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(시각, 청각, 지체, 뇌병변)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

\* '14년 기준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: 확대답안지 제공, 시험시간 연장(1.2배), 저층 시험장 배치

- 추후,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

《 의사소견서 내용 》

-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
-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

- 지역별 종합병원 현황 : 시, 군, 구 별로 홈페이지에 의료(복지) 정보가 있기도 하며, 시,군,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가능

12. 필기시험 가점자 자격취득 기준일

- o 필기시험 가점자 자격취득 기준일 :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되어야함

13. 자격증 가산점 중복적용 여부

- o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인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

14. 워드프로세서(1급) 자격증 가산점

- o 국가기술자격법 종목의 폐지·통합·신설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이 워드프로세서로 통합(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'12. 6. 29)되어 (구)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도 가산 적용됨(단, 2급.3급은 가산점 없음)
- o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

- 통신·정보처리 분야,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

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(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)			
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\*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
-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공통적용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됨(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'15. 5. 6)

o 자격증 관련 변천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(<http://license.korcham.net>), Q넷([www.q-net.or.kr](http://www.q-net.or.kr))에서 확인 가능

### 15. 일정한 지역 거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근거

o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,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시지역을 제한하여 실시 할수 있음 (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)

### 16.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의 응시인원 및 경쟁률

o 2014년도 287명 모집에 26천명 시험응시(경쟁률 91:1)

## 17. 필기 및 면접시험 방법

- 과목별 40%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이 높은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.5배수 내 선발(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)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커트라인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으로 간주
-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갖추어야할 공직관, 전문지식 응용능력, 발표력,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
  -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은 별개로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이 2차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## 18. 주민등록지 시험응시 및 합격한 경우, 본인이 원하는 타지역으로 첫임용이 가능한지 여부

- 최종합격 후 모집단위별 시험응시 지역으로 임용 됨
  - 응시지역을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응시지역 내 임용이 되며, 해당지역 또는 해당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른지역, 다른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음(공무원임용령 제45조)
  - ex) 모집단위 서울지방우정청 국제우편물류센터 응시자인 경우  
서울지방우정청 국제우편물류센터로만 임용됨



## 19. 공무원 임용유예 가능여부 및 임용유예 사유

- 채용후보자 명부유효기간 범위 내(2년) 임용유예 가능
- 임용유예 사유(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)
  -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
  -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(휴학인 경우는 제외)
    - \* 야간대학 재학 : 근무와 병행이 가능하므로 임용유예 제외
  -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  -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
    - \* 임용유예 사유 중 '학업을 계속' 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## 20.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 및 신체검사 가능 병원

-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 실시
- 신체검사 지정병원 :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